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79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안호영 · 김남근 · 박 정
진성준 · 임오경 · 이용우
이재관 · 김주영 · 김종민
최혁진 · 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

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72조제1항, 제3항, 제5항).
- 나.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음(안 제72조제6항).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72조제2항, 제8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하여야 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표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로 사용할 수 있다.

⑦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제4항·제5항·제7항·제8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u>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총괄·관리하는 자-----</u> -----. ② ----- <u>정하여야 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1. ~ 3. (생략)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설>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

-----.

⑥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 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